

법제처, 법제로 적극행정의 꽃을 피운 우수사례 6건 선정

- 보건복지부 ‘소득세-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정상 피폭 보고기준 현실화’ 등
2025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공유 및 시상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8일(목),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행정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행정 법제를 확산·전파하기 위한 ‘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법제처가 선정한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6건을 맡고 있는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그동안 추진한 적극행정 법제의 주요 내용, 추진 배경 및 성과 등을 공유했다.

* 참석 기관 :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재산처

법제처는 지난 2020년부터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법령 입안·정비 및 해석 등 법제 업무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천한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찾아 그중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해 왔다.

올해는 총 114건의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발굴했으며,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각 사례의 배경 및 성과, 추진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는 등 적극행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공직자가 앞장서서 적극행정을 실천해야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국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 분야에서 적극행정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2025년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6건 >

연번	기관	사례 내용
1	외교부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로 청년 권익 신장
2	법무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신설
3	보건복지부	이중신고, 서류 떼기 마라톤을 없앴 소득세-건강보험료 연말 정산 신고 일원화
4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법제화로 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보호
5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정상 피폭 보고기준 현실화로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 골든타임 확보
6	지식재산처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근거 마련

※ 붙임: 2025년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주요 내용 참조

담당 부서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임지연	(044-200-6561)
		담당자	사무관	이다은	(044-200-6565)



기 관	주요 내용
외교부 (여권과)	■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로 청년 권익 신장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2항, '25. 5. 1.) - (문제점) '21.7.6. 이후 병역미필자도 해외여행허가와 무관하게 여권을 발급하되, 일부 유형(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등)에 대해서는 복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으나, 이에 대해 소수의 미귀국자(150~200명) 때문에 대다수(연 17만명)의 선량한 청년들에게 여권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자 과도한 행정이라는 논란 지속 - (정비내용) 여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병역미필자의 복수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고, 여권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에서 병역관계 서류 삭제
법무부 (국가소송과)	■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신설(「국가배상법」 제2조제3항 (신설) '25. 1. 7.) - (문제점) 국가배상법 및 판결례는 헌법 제29조 제2항의 이른바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따라, 전사·순직 군경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음.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 본인의 권리와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권리이므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과 별개로 보장할 필요가 있었음 - (정비내용)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이중신고, 서류 떼기 마라톤을 없앤 소득세-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신설) / '25. 1. 1.) - (문제점) 사용자는 보험료 연말 정산을 위하여 매년 3. 10.까지 건보공단에서 소속근로자의 보수 총액을 통보해야 하므로 세무당국과 건보공단에 이중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행정부담 발생 - (정비내용)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근로자 전년도 보수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자료 제출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건보공단은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 자료를 제공받아 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기 관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폭염안전 법제화로 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보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부터 제560조까지, 제562조 및 제571조 / '25. 7. 17.) - (문제점) 기존의 폭염 속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휴식 부여 등의 폭염안전 조치는 가이드라인 위주의 권고 중심이라 실효성 확보에 한계 - (정비내용) 폭염을 근로자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화하고, 사업주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원자력 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비정상 피폭 보고기준 현실화로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 골든타임 확보(「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규정」 [별표] 보고대상 사건 '25. 5. 16.) - (문제점) 기존 규정은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사람을 '치료'할 때 보고하도록 한정하고, 피폭 사실도 선량한도를 초과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만 보고하도록 하여 현장의 긴급성과 맞지 않아 종사자의 실질적인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 피부 홍반, 구토 등 심각한 피폭을 의심할 만한 급성 영향이 나타났음에도 선량 초과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고 의무가 없어 사업자의 소극적 대응을 유발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저해 - (정비내용) 기존의 '선량한도 초과 확인 시'라는 기준에 더해, '피부 홍반, 구토, 혈액 이상 등 급성 영향이 발현 또는 확인되었을 때'에도 즉시 보고하도록 기준을 신설해 선량평가에 시간이 소요되는 입법 공백을 메우고 눈에 보이는 위험 징후만으로도 규제기관이 즉각 개입 근거 구축
지식재산처 (상표심사정책과)	▪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근거 마련(「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신설), '25. 5. 27.) - (문제점) 해외직구 위조상품이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판매업자가 위조상품을 국내의 개인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행위가 현행법상 상표권 침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통관보류 조치 곤란 - (정비내용)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로 위조상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보는 조문 신설을 신설하고, 행위 유형을 '공급'으로 한정하여 영리목적 없는 개인 소비자는 처벌하지 않고 위조상품에 대한 대물적 조치(통관보류조치)는 가능하도록 규정